

# 서울특별시 강서구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(최 세 진 의원 대표발의)

의안 번호	2024-28
----------	---------

발의연월일 : 2024. 2. 21.

발 의 자 : 최세진, 이종숙, 정재봉,  
고찬양, 신찬호, 정정희,  
한상욱, 홍재희, 이충현,  
박주선, 전철규

## 1. 제안이유

어린이들의 교통안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어린이 보호구역 내에 차량통제에 관한 근거 조항을 마련하고 공사시행자에 통학로 안전관리계획 수립을 요구할 수 있도록 조례를 개정하고자 함.

## 2. 주요내용

- 가. 어린이 보호구역 내 차량통제 등에 대하여 규정함(안 제7조제2항)
- 나. 어린이 보호구역 내의 공사현장 관리에 관한 사항 신설(안 제8조)
- 다. 맞춤형 규정에 따라 조문을 정비함(안 제2조 및 제3조제2항 등)

## 3. 참고사항

- 가. 관계법령 : 「교통안전법」 제3조
- 나. 협조부서 : 교통행정과
- 다. 입법예고 : 2024. 2. 23. ~ 3. 4.

## 서울특별시 강서구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서울특별시 강서구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조제2호나목 중 “「초·중등교육법」 제38조”를 “「초·중등교육법」 제38조”로 하고, 같은 호 다목 중 “「영유아보육법」 제10조”를 “「영유아보육법」 제10조”로 하며, 같은 호 라목 중 “「학원의 설립·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」 제2조”를 “「학원의 설립·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」 제2조”로 한다.

제3조제1항 후단을 삭제하고,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- ② 강서구민은 어린이 교통안전을 위한 사업과 시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협력하여야 한다.

제4조제2호 중 “「도로법 시행령」 제3조”를 “「도로법 시행령」 제3조”로 한다.

제7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,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- ② 구청장은 필요한 경우, 어린이 보호구역 내에 차량통제를 관할 경찰서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.

제8조를 제9조로 하고, 제8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8조(어린이 보호구역 내의 공사현장 관리) ① 구청장은 어린이 보호구역 내의 공사현장에 대하여 필요시 어린이 교통안전을 위한 통학로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도록 공사시행자에게 요구할 수 있다.

② 제1항에 따른 통학로 안전관리계획 작성 시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.

1. 공사 시행 시 교통안전 등에 관한 사항
2. 공사장 출입구 위치 등의 적정성 및 신호수 배치 등에 관한 사항
3. 공사안내표지·교통안내표지 설치 등에 관한 사항
4. 해당 학교장과의 사전협의 시행에 관한 사항 및 통학시간 내 공사 시행에 관한 사항
5. 어린이 보호구역 내의 교통안전시설 설치·관리에 관한 사항
6. 어린이 보호구역 내의 도로부속시설물의 설치·관리에 관한 사항
7. 공사 중 상존하는 위해요소에 관한 사항
8. 공사 전·중·후 어린이 통학로 보행환경 및 교통사고 예방에 관한 사항
9.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

③ 구청장은 어린이 보호구역 내 공사현장에 대하여 공사 시행을 어린이 통학시간 외에 실시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.

## 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## 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제2조(정의)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</p> <p>1. (생 략)</p> <p>2. “교육시설”이란 다음 각 목의 시설을 말한다.</p> <p style="padding-left: 20px;">가. (생 략)</p> <p style="padding-left: 20px;">나. 「초·중등교육법」 제38조와 제55조에 따른 초등학교·특수학교</p> <p style="padding-left: 20px;">다. 「영유아보육법」 제10조에 따른 어린이집(법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른 보육시설에 한정한다)</p> <p style="padding-left: 20px;">라. 「학원의 설립·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」 제2조에 따른 학원 (법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른 학원에 한정한다)</p> <p>3. (생 략)</p> <p>제3조(책무) ① 구청장은 어린이 교통안전을 위하여 각종 시설물을 설치·개선하고 어린이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. ② <u>강서구민은 어</u></p>	<p>제2조(정의) ----- -----.</p> <p>1. (현행과 같음)</p> <p>2. ----- -----.</p> <p style="padding-left: 20px;">가. (현행과 같음)</p> <p style="padding-left: 20px;">나. 「초·중등교육법」 제38조----- -----</p> <p style="padding-left: 20px;">다. 「영유아보육법」 제10조----- ----- -----</p> <p style="padding-left: 20px;">라. 「학원의 설립·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」 제2조----- ----- -----</p> <p>3. (현행과 같음)</p> <p>제3조(책무) ①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.</p> <p style="text-align: right;">&lt;후단 삭제&gt;</p>

린이 교통안전을 위한 사업과 시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협력하여야 한다.

<신 설>

제4조(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시설 설치·관리 등) 구청장은 어린이 통학로의 교통안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시행할 수 있다.

1. (생 략)
2. 「도로법 시행령」 제3조에 따른 도로부속물의 설치·관리
3. 4. (생 략)

제7조(어린이 보호구역에서의 차량통제) (생 략)

<신 설>

<신 설>

② 강서구민은 어린이 교통안전을 위한 사업과 시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협력하여야 한다.

제4조(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시설 설치·관리 등) -----  
-----  
-----.

1. (현행과 같음)
2. 「도로법 시행령」 제3조-----  
-----  
--
3. 4. (현행과 같음)

제7조(어린이 보호구역에서의 차량통제) ① (현행 제목 외의 부분과 같음)

② 구청장은 필요한 경우, 어린이 보호구역 내에 차량통제를 관할 경찰서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.

제8조(어린이 보호구역 내의 공사현장 관리) ① 구청장은 어린이

보호구역 내의 공사현장에 대하여 필요시 어린이 교통안전을 위한 통학로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도록 공사시행자에게 요구할 수 있다.

② 제1항에 따른 통학로 안전관리계획 작성 시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.

1. 공사 시행 시 교통안전 등에 관한 사항
2. 공사장 출입구 위치 등의 적정성 및 신호수 배치 등에 관한 사항
3. 공사안내표지·교통안내표지 설치 등에 관한 사항
4. 해당 학교장과의 사전협의 시행에 관한 사항 및 통학시간 내 공사시행에 관한 사항
5. 어린이 보호구역 내의 교통안전시설 설치·관리에 관한 사항
6. 어린이 보호구역 내의 도로부속시설물의 설치·관리에 관한 사항
7. 공사 중 상존하는 위해요소에 관한 사항

제8조 (생략)

8. 공사 전·중·후 어린이 통학로 보행환경 및 교통사고 예방에 관한 사항

9.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

③ 구청장은 어린이 보호구역 내 공사현장에 대하여 공사 시행을 어린이 통학시간 외에 실시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.

제9조 (현행 제8조와 같음)



□ 「**교통안전법**」

제3조(국가 등의 의무) ① 국가는 국민의 생명·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교통안전에 관한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하고 이를 시행하여야 한다.

② 지방자치단체는 주민의 생명·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그 관할구역 내의 교통안전에 관한 시책을 해당 지역의 실정에 맞게 수립하고 이를 시행하여야 한다. <개정 2020. 6. 9.>

③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(이하 “국가등”이라 한다)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른 교통안전에 관한 시책을 수립·시행하는 것 외에 지역개발·교육·문화 및 법무 등에 관한 계획 및 정책을 수립하는 경우에는 교통안전에 관한 사항을 배려하여야 한다.